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84 발의연월일: 2020. 11. 24.

발 의 자:서영교·강득구·김민철

김병기 · 김승원 · 김영배

김주영 · 송재호 · 신정훈

오영환 · 이개호 · 이광재

아수진비 · 한병도 · 홍기원

의원(15인)

제안이유

재난안전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기대되는 산업 분야임. 또한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클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회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 발하여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식되어 상용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 고 있고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분류 및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

성,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안전신기술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 공공기관에의 우선활용 권고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이고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 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 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6조).
-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 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함 (안 제7조)
-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연구실태·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관리·제공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사업 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안전사업자, 재난 안전 관련 기관·단체, 학교 간의 상호연계를 통한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 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진흥원은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제14조).

-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재난안전기술 등을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 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받은 재난안 전제품 또는 재난안전신기술의 우선 활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 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 재난안전기술 등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파.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
- 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업무를 진흥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함(안 제 27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 4. "재난안전사업자"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재난안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 3.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5.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6. 재난안전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
 - 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 제7조(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내용·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연구실태·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난안전분야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된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 ⑤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 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 3. 재난안전산업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 4. 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 5. 재난안전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조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안전사업자,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재난안전사업자를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하는 비용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른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조성 또는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비용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⑥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진흥단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제13조(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 전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재난안전산업의 육성과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지원
- 2. 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지원
- 3. 제9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지원
- 4. 제10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5. 제11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6. 제15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지원
- 7. 제17조에 따른 인증 및 제18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지원
- 8. 제21조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9. 제22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수요조사 지원
-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사업
- 11.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진흥원에 대한 감독 등) ① 진흥원은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제15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재난안전기술 또는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재심 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기술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 대상, 절차, 표시,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16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3.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4.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제품임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인증의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대상, 절차, 표시,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 4. 업종변경·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제품의 생산·제작 등이 어렵다 고 판단되는 경우
-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우선활용 권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기술이나인증제품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한 재난관리책임기관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신기술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1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분 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를 개발·생산 및 판매하거나 개발된 제품·서비스를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예산의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의 내용·대상·방법·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 리책임기관 등의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운영) ①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 여 재난안전산업협회(이하"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 2. 재난안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 3.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4.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유통 촉진
- 5. 재난안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
-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재난 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 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 제2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 제25조(표창) 정부는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26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 2. 제12조제5항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의 해제
 -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 제27조(권한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 2. 제10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 3. 제1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4. 제12조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조성 및 운영
 - 5. 제15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 6. 제17조에 따른 인증 및 제18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7. 제21조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8. 제22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 9. 제24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
-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원 또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지정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 2.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자연재해대책법」 제61
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로써 보호기간이 지나지 않은 방재신

기술은 이 법 제15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품은이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 신기술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 제15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 술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 조의4에 따른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이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를 삭제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부터 제61조의4까지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제15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된 제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제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